

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흐름도

(국적법 제3조)

2017. 2. 28. 기준

1

인지신고

가족관계등록관서

- 법률혼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
- 국민인 부의 기본증명서에 자녀 인지사실 기재

2

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

출입국관리사무소

-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
※ 구비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(www.hikorea.go.kr)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(☎1345)에서 안내

3

신고 수리

출입국관리사무소

- 친자관계(유전자 검사) 등 요건 확인 후 신고 수리

4

고시 및 통보

출입국관리사무소

- 관보고시 및 본인 통지
- 대법원 등 관계기관 통보(가족관계등록부 생성)

5

외국국적 포기 등

출입국관리사무소

- 허가 후 1년 내 외국국적 포기(원칙)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
–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상자는 「국적법」 제10조에 규정
※ 외국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거나, 국적취득 후 지체 없이(3개월 내)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개시 하였으나 1년 내에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

6

주민등록

- 주소지 읍·면·동 사무소(주민센터)



법무부